

#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재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용역
-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31. 4. 30.까지  
\* 기관사정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라. 추정금액 : **금148,951,000원**(금일역사전팔백구십오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계약방식

-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 총액입찰
-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다. **단독이행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가능**

##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

분야 중 도시계획 분야 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당해사업으로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기록화 실적**이 있는 자

-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 ③ 「중소기업제품 및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g.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을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종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인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 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한다.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바.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되면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아.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기준에 따름  
아.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기준에 따름.

#### 4.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06. 16.(화) ~ 2026. 06. 29.(월)

나.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06. 29.(월) 10:00 ~ 16:00 (시간 내 접수)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시 제안업체의 추천으로 다빈도 순 평가위원 선정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함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2) 제출장소 : 가평군청 2층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재생팀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031-580-2358

####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FAX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별도 밀봉 제출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입찰참가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4) 제출서류 : 불입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같음

다.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설명 방법에 따라 진행

1) 일 시 : 2026. 07. 06.(월) 14:00 \*일정 변경시 유선 통보 예정

2) 장 소 : 가평군청 2청사 4층 통합교육장

3) 제안설명 : 발표 25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표 \*당일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함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완료 후

####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함.(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먼저 대상인 경우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등을 따릅니다.

## 7.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등을 따릅니다.

##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지별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등  
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http://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아. 무응찰,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로 재공고 시 기존 제출된 제안서를 재활용 할 수 없고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기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자.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11. 기타 문의 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 회계과 계약팀(☎031-580-2044)

나. 사업 및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도시과 도시재생팀 (☎031-580-235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ap desk(☎1588-0800)

2026. 06. 19.

가 평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붙임)재무관 귀하

**입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균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균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균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균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균에 청구할 수 없

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균에 도달할 경우, 가평균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4. 노무비의 지급

####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균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채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채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금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 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금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 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 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